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36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3. 10. 24. 공포, 24. 4. 25. 시행) 및 하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및 별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시 필요한 장비·인력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나.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기준(안 제3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9.19(목)까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 044-201-4280, 팩스 044-201-5587)
- 전자우편: snhanna@korea.kr